보 험 약 관

(무배당 뇌졸중보장특약)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험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④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각각 주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특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특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미만자,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3.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에 정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4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졸중”(이하 “뇌졸중”이라 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계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중에서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뇌졸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에 정한 대한민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의료장비, 시설 및 의료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병리학적 소견, 세포학적 소견, 이학적 소견(X선, C.T, 내시경, 심전도, 혈액검사등), 임상학적 소견 및 수술소견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일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 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졸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뇌졸중 사망보험금을 지급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확정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 6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뇌졸중 치료급여금을 지급(다만, 1회에 한하여 지급함)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또는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면제
② 제1항 제2호의 뇌졸중치료급여금의 경우 수익자가 선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예정이율로 계산한 선지급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드립니다.

제 6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전까지로 하며,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70세까지로 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일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에 따라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한 다음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8조【해지 특약의 부활】
✂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3. 뇌졸중진단서(뇌졸중 진단확정의 경우)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또는 제3호의 진단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10조【보험금등의 지급】
✂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이 특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11조【특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또는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1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13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인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40세 가입, 보험가입금액 10만원, 20년만기, 전기월납, 원]

경과기간	남 자		여 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192	0	132	0
3년	576	102	396	93
5년	960	370	660	291
7년	1,344	599	924	446
10년	1,920	799	1,320	558
15년	2,880	850	1,980	533
20년	3,840	0	2,640	0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뇌졸중사망 보 험 금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졸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졸중치료 급 여 금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확정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보 험 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2급 또는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면제